

자격확인청구서

처리 기간

14일

※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.

확 인 청 구 자	성 명	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·국내거소신고번호)	청구인의 현재자격	
			☐ 가입자 ☐ 가입자였던 자	
	주 소	우편번호 ()	전화 번호	

자 격 확 인 청 구 내 역

자격확인청구사유	☐ 자격취득신고누락 ☐ 자격취득·상실기간 일부누락 ☐ 가입자 종류 변동 ☐ 기준소득월액 변동			
	명 칭	사용자성명	소 재 지	전 화 번 호
근무 중인(하였던) 사 업 장				
근무 및 신고 누락 현황	근무기간	누락기간	누락사유	
	—	—		

기 타 참 고 사 항

「국민연금법」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격확인청구를 합니다.

수수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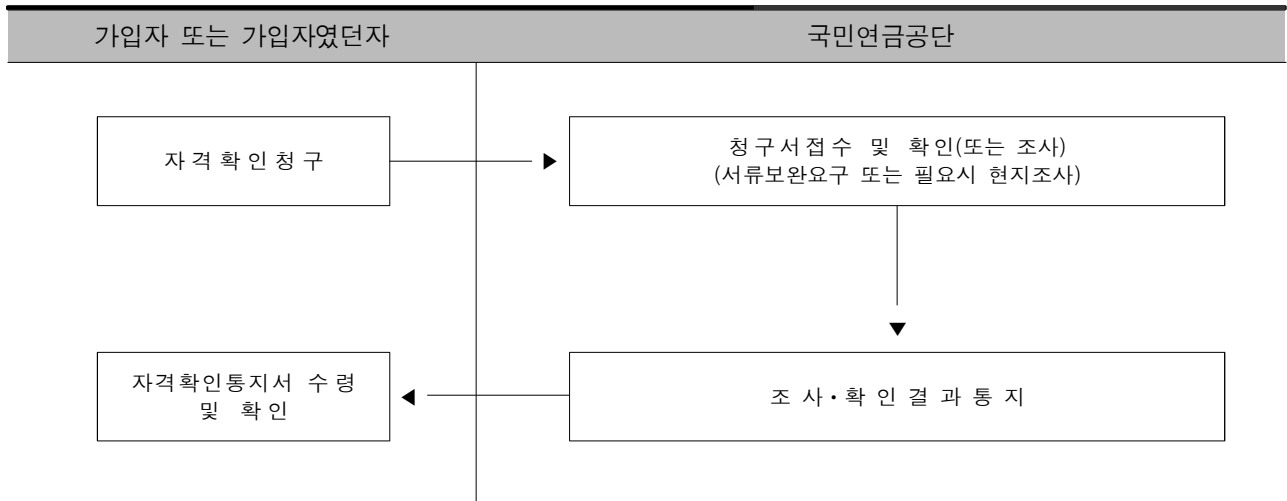
없 음

접수인

청구일 :

청구인 : (서명 또는 인)

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



<기재요령 및 유의사항>

1. 이 청구서는 해당 청구인(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)이 "자격확인청구사유와 관련하여 현재 근무 중인 사업장이나 근무하였던 사업장"의 관할 공단 지사에 청구하십시오.
2. 자격확인청구사유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에 현재 근무 중일 경우에는 "□가입자"에,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"□가입자였던 자"란에 "√"표를 하십시오.
3. "자격확인청구사유"란에는 취득신고 그 자체가 누락되었을 때에는 "□자격취득신고누락"에, 자격취득 또는 상실일자가 취득한 날이나 퇴직 등 상실한 날보다 더 빠르게 또는 더 늦게 신고된 경우에는 "□자격취득·상실기간 일부누락"에, 실제로는 지역가입자인데 임의가입자로 관리되는 등 가입자 종류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는 "□가입자 종류변동"에, 기준소득월액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는 "□기준소득월액 변동"에 "√"표를 하십시오.
4. 청구인이 자격확인청구사유와 관련하여 현재 사업장에 근무 중인 경우에는 그 사업장을,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퇴직사업장의 명칭, 사용자 성명, 소재지, 전화번호를 적으십시오.
5. "근무 및 신고누락현황"란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"근무기간"과 근무기간 중 취득신고 등 "누락기간과 누락사유(사용자의 고의적인 신고기피 등)"를 적으십시오.
6. 해당 자격확인청구사유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자세히 적어 주십시오.